

행정처분의 기준(제7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다.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(법 제36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또는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생물자원보전시설 또는 박제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,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5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
라.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 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행 정 처 분 기 준			
		1차	2차	3차	4차
가.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의 포획·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	
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15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			
2)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15조 제1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	
3)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 받은 목적·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	법 제15조 제1항제3호	경고	허가취소		
나.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			
2)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	
3)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3호	경고	허가취소		
다.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1호	허가취소			
2)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	
3)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	법 제20조 제1항제3호	경고	허가취소		

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					
4)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받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인공증식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0조 제1항제4호	경고	허가취소		
라. 야생동물의 수출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22조 제1호	허가취소			
2)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	법 제22조 제2호	경고	허가취소		
3) 수입 또는 반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	법 제22조 제3호	경고	허가취소		
마. 생물자원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				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	
2)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	법 제36조 제1항제2호				
가) 시설 및 인력요건이 모두 부족한 경우		등록취소			
나) 시설요건이 부족한 경우		경고	등록취소		
다) 인력요건이 부족한 경우		경고	경고	등록취소	
바. 박제업자가 법 제40조	법 제40조				

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	제5항				
1)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 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등록취소
2)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 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등록취소
3)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		경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등록취소